

2025-12-19

(25-8733)

페이지: 1/1

무역기술장벽위원회

원본: 영어

통보

다음 고지는 10.6항을 근거로 회람한다.

1. 통보국가: <u>중국</u> 해당할 경우,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(3.2 및 7.2):
2. 담당기관(Agency responsible): 시장규제국(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국)
3. 조항 2.9.2 [X], 2.10.1 [], 5.6.2 [], 5.7.1 [], 3.2 [], 7.2 [], 기타에 근거해 통보:
4. 해당제품(HS 또는 국정세율 품목. 해당할 경우, ICS 회원국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): 태양광 모듈(HS code(s): 854143), (ICS code(s): 27.160)
5. 제목(페이지수, 언어, 열람 방법): 중국 국가표준, 태양광 모듈 명판 라벨링 표기 요건(12페이지, 중국어) 통보 문서 열람 링크 및/또는 요청 시 사본 제공이 가능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: 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CHN/25_09090_00_x.pdf
6. 내용: 본 문서는 태양광 모듈 명판에 대한 기본 요건 및 라벨링 표기 요건에 대해 명시한다. 본 문서는 장기간 야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모듈 및 박막 태양광 모듈의 명판 라벨링 표기에 적용된다. 다른 유형의 태양광 모듈도 이 문서를 참고로 활용할 수 있다.
7. 적용할 경우,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표와 근거: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, 라벨링, 기만행위 방지 및 소비자 보호
8. 관련 문서: -
9. 채택 예정일: 미정 시행 예정일: 채택일로부터 6개월
10. 의견 제출: 의견 마감일: 2026-02-17 [X] 통보일로부터 60일 통보 관련 의견 처리를 위해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: 중국 WTO/TBT 국가 통보 및 질의처 전화 : +86 10 57954633/ 57954627 이메일: tbt@customs.gov.cn